



가정통신문

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석인정 안내

교훈

성실

대상

전교생
학부모

담당
부서

교무기획부

안녕하십니까? 학교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감사드립니다. 본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중지 기간 동안의 출석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각각의 등교중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며, 가정 내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.

【등교중지 대상 학생】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증빙 자료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원치료통지서* 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[별지 제 22호 서식]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격리통지서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*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거인의 격리통지서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 증상 발현 학생) ※ 임상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해야 함. (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, 방문확인서 양식 지참)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 ※ 참고사항 ▶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(방역지침 40쪽 참고)	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 인 경우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) [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임선생님께 확인서 양식 요청 후 지참해서 선별진료소 방문 - 선별진료소 명의 또는 기관장 또는 의료진 명의 날인(서명) 필수 - 기관에 따라 방문확인서 발급에 비용 발생 가능 (방문 적 확인할 것)

2021. 4. 7.

장 호 원 고 등 학 교 장

직인
생략